

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

사업연도 (과세기간)	2021-12-01 ~ 2022-11-30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(공익법인등)	① 단체명	사단*****	② 대표자	오**
	③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268-82-000**	④ 전화번호	02-400-****
	⑤ 소재지	서울특별시 송파*****		
	⑥ 유형 (해당란에 √)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등 공공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종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선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
2.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

(단위: 원)

⑦ 구분 ⑩ 기부자	⑧ 합 계		⑨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(종전 법정기부금)		⑩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제 1호에 따른 기부금 (종전 지정기부금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법 인	25	14,100,000	25	14,100,000	0	0
개 인	0	0	0	0	0	0
합 계	25	14,100,000	25	14,100,000	0	0

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제3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05월 08일

제 출 인

오** (서명 또는 인)

송파 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⑥ 유형란: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(공익법인 등)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.
- ⑧ ~ ⑩ 란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.
-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(「법인세법」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)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.